

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7. 7. 11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7. 7. 15
- 다. 상 정 일 자 : 97. 7. 23 (제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 안 자 : 재무과장 정 부 응

나. 제안이유

- 제3조 별표 1중 15호를 16호로 하고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별표 1)

구 분	기 준	수수료액	비 고
15.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			
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(서식)	1필지	400원	(조사연도 구분하여 필지당 징수)
② 토지(임야) 대장등본에 기재	1필지	300원	

다. 주요내용

-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, 수수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민병항)

-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키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 부 :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 - 99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 : 1997. 7. 11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('96. 8. 2 건설교통부령 제74호)으로 관련조항 신설

2. 개정근거

-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

3. 주요골자

제3조 별표 1중 15호를 16호로하고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별표 1)

화순군제증명수수료요율표

구 분	기 준	수수료액	비 고
15.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			
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(서식)	1필지	400원	(조사연도 구분하여 필지당 징수)
② 토지 (임야) 대장등본에 기재	1필지	300원	

화순군제증명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제증명증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별표 1중 15호를 16호로 하고 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 1)

화순군제증명수수료요율표

구 분	기 준	수수료액	비 고
15.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			
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(서식)	1필지	400원	(조사연도 구분하여 필지당 징수)
② 토지 (임야) 대장등본에 기재	1필지	3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